## 건축기준 그시

000			입면도에 덮개 설치 표기	
A - 000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적용을 권장한다.	실치하여 침입이 않도록 함.	옥상에서 최상층 으로 배관 등을 타고로 하여야 한다.
DRAWING NO. 토면면 환호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벽에 노출되는 냉난방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권장사항 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NAME OF DRAWING 된 면	계단실에 창호 설치함. (평면도, 입면도 참조)	10.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권장사항 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노
SCALE 1 100	권장사항 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9.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1층승강장,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권장사항 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2.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 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sup>도</sup> 차대수 30대이하 이므로 폐쇄회로 가장치 대상이 아님.			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
DRAWN BY	최대 꼬노는 최조 조노의 10배 이대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최소조도 300룩스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50룩스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나 사업표쥬화범 제15주에 따라 하국사언표주에 정변화을 이즐
전 기 설 계 ELEC. BY	및 차로 : 최소조도는 10록스			비고
MECH. BY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벽면에서 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담 각 목과 같이 한다.			20mm 이하, 하종점 F3(1.5kN으로 15mm 이하 이어야 한다.
ARCH BY 간 속 설 게	규칙 11조 구조.설비기준	8.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년. NS F 2030(군, 영, 서디의 엄럽서영 시점 영립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범죄예방 도서 참조 투시형 담장 설치	7. 담장은 사각지대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ור, אדמייםם ד אר סדיור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권장사항 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등 검침용 기기는 세디	각하이건스 정도실 스템정식적 설፰.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
	범죄예방 도서 참조 반사경 및 조명 설치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되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의 식별할 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요 <sup>60</sup> 가 하다	1. 세대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별표 1] 1 차무이 칭이 바여 서누기주은 다으가 간다
	기 준 반 영 사 항		기 준 반 영 사 하	기준
NOTE JI &		쉬야 한다.	,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우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야당동 185—9의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리주택,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과화사항)	제3조(작용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이 아파트 오피:
PROJECT TITLE 공사 영				
TEL: 031)935-5780 FAX: 070)4324-5045 E-Mail: Namuarc@Naver.com			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 · · / · · · · · · · · · · · · · · · ·
나무 건축사 사무소			제61조의3에 따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